

2024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문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전년대비 소폭 인상되었으니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3년도	1,885,000	1,690,8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 방문요양 급여비용(원)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15%)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5%)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 2024년 1월 1일 시행 방문요양 급여 월이용료 예시 (단위:원/월)
[일 180분시간, 월 24일 이용시 본인부담금 (일반 :15%,경감 : 9%,경감 : 6% 기초 :0%)

경감구분	원/일	총급여액 (24일 기준)	본 인 부 담 내 역		비 고
			본인부담비율	본인부담액	
일반 (15%)	54,320	1,303,680	15%	195,550	
경감 (9%)	54,320	1,303,680	9%	117,330	
경감 (6%)	54,320	1,303,680	6%	78,220	
기초 (0%)	54,320	1,303,680	0%	0	

※위 사항은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방문요양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01. 01.

다운방문요양센터장